

조교임용규정

1997.03.01.제정	1997.09.01.일부개정	2000.03.01.일부개정	2001.02.28.일부개정
2002.02.01.일부개정	2004.03.01.일부개정	2006.08.01.일부개정	2007.09.28.일부개정
2012.03.01.일부개정	2014.03.01.일부개정	2015.02.25.일부개정	2018.08.31.일부개정
2021.04.23.일부개정	<u>2021.12.01.일부개정</u>		

<교무팀>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조교의 임용 및 인사,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분) 본 대학교 조교는 학사조교, 실습조교(이하 “조교”라 **한다**)로 구분한다. (**개정** 2007.9.28., 2012.3.1, **2021.12.1.**)

제3조(임무) ① 학사조교는 소속부서장의 지도를 받아 **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**, 교과 운영에 관한사항, 학술 및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, 학사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. (**개정** 2007.9.28, 2012.3.1, **2021.12.1.**)

② 실습조교는 실험·실기·실습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. (개정 2007.9.28,2012.3.1.)

③ 인턴으로 근무하는 학사 및 실습조교는 소속대학(부서)의 업무를 보조한다.

[항 신설 2015.2.25.]

제4조(정원) 조교의 정원은 총장이 정한다. (개정 2004.3.1.)

제5조(자격) ① 본 학교법인 정관 제77조 제1항에 의한 결격 대상자는 임용될 수 없다. (개정 2007.9.28.)

② 조교는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이 2개월 이내로 남은 자에 한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달의 말일까지 인턴으로 임용할 수 있다. (개정 2015.2.25.)

③ 삭제

제6조(임용) ① 조교는 소속대학(부서)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 (개정 2004.3.1, 2014.3.1.)

② 삭제

③ 조교의 임용은 매월 1일자를 원칙으로 하고, 임용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2.3.1, 2014.3.1.)

제7조(임기) ① 조교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 (개정 2014.3.1, 2015.2.25,

2018.8.31.)

② 조교의 임용기간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다. (신설 2018.8.31.)

③ 조교로서 복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임기 중이라도 면직 할 수 있다. (개정 2015.2.25, 2018.8.31, 2021.4.23.)

제8조(재임용) ① 삭제 <2015.2.25.>

② 삭제 <2004.3.1.>

제9조(복무) 조교의 복무에 관하여는 「교직원복무규정」을 준용한다. (개정 2006.8.1, 2007.9.28.)

제10조(보수) ① 조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(개정 2007.9.28, 2012.3.1, 2014.3.1.)

② 삭제 <2007.9.28.>

제10조의2(4대보험 및 퇴직금) ① 국민연금, 고용보험, 건강보험, 산재보험 등의 4대보험은 관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하되, 개인부담금은 월급여에서 공제한다.

② 조교의 퇴직 시 퇴직금은 「근로기준법」,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다.

[조 신설 2012.3.1.]

제10조의3(특수업무수당) 간호학과 실습업무를 담당하는 실습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[조 신설 2021.4.23.]

제11조(제출서류) 신규 임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8.8.31, 2021.4.23.)

1. 지원서 1부
2. 주민등록등본 1부
3. 학력증명서 1부
4. 소속부서장 추천서 1부
5. 서약서 1부
6. 기타 필요한 서류

제12조(규정의 준용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교직원인사규정 및 「교직원복무규정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재직하는 조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 다만,

본 규정 시행일과 같이 재임용되는 행정조교는 제8조 제2항에 불구하고 총장 제청이 있는 경우 1년 단위로 2000년 2월 28일까지 임용할 수 있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규정은 2007.9.28.부터 시행한다.

② 경과조치

1. 2007.3.1.이후에 임용된 학사조교는 교육조교로, 행정조교는 학사조교로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.
2. 본 규정의 제10조에도 불구하고 2007.2.28.이전에 임용된 자 및 (구)동명대학 잔존학과에 임용된 자는 종전의 보수를 각각 적용하며, 재임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직급구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일 현재 재직 중인 교육조교는 이 규정에 의해 2012년 3월 1일자로 학사조교로 전환한다.
- ③(보수에 관한 경과조치) 보수는 2012년 3월분 급여부터 이 규정의 <별표>에 따라 지급한다.
- ④(연금 및 퇴직금에 관한 경과조치) 2012년 3월 1일자로 사학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전환된 재직 조교의 연금 및 퇴직금은 2012년 2월 29일까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고, 2012년 3월 1일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 및 퇴직금은 국민연금법,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2014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된 자의 임기는 종전 규정 제7조 제1항을 적용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제3조제3항, 제5조제2항, 제7조제1항은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특수업무수당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간호학과 실습업무 담당 조교에게 지급된 특수업무수당은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